

정부, 시간제 근로자 법적용 기준 논란

여성노동계 “휴가 삭제는 노동조건 악화” 반박

노동부 고용활성화 답변에 ‘백지화’ 촉구 성명 발표

최근 노동부가 노동법 개정안으로 5가지 휴가조항을 뺀 ‘시간제 근로자 법적용기준’을 내놓자 지난 5일 여성노동계가 이의 백지화를 주장하는 반박 성명서를 발표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노동부의 시간제 근로자 법적용 기준안에 따르면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법적용기준 근로시간인 44시간의 7할에 해당하는 30.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유급생리휴가, 산전후유급보호휴가가 부여되지 않게 된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회장 이효재)은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개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즉각 발표, “노동부의 이번 계획이 여성의 지위향상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정책을 펴 왔다는 6공화국의



▲구로공단의 여성노동자들.

논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기록하는 우리 현실에서 지금보다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철회를 거듭 촉구.

그러나 정부는 1주 3일, 1일 3시간 근무 등 소정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근로자에게 휴가·휴일의 적용 예외 규정이 없어 사업장에서 시간제 근로자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로기준법 개정안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측은 따라서 이러한 시간제 근로자 고용저해요인을 없앨 경우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은 일반근로자보다 높게 책정되는 반면 다른 근로조건은 단순하게 돼 고용활성화 효과를 얻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기획원 고용조사 통계에 의하면 89년 현재 주 36시간 미만의 신체임금근로자중 여성은 59.1%인 22만 7천명을 차지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30.8시간 미만 노동자를 ‘시간제 노동자’로 볼 때 시간제 노동자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측의 설명으로 “여성노동자의 고용과 노동 조건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노협과 여연측에서 밝힌 노동부의 시간제 고용확대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정부의 시간제 고용확대가 실제로는 여성 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와 여성의 고용불안정을 더욱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간제 노동자의 임금 등이 극히 불리한 실정에서 여성의 저임금 현상은 더 가속화됨은 물론 남녀임금격차를 더 크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전노협, 여연측은 시간제 노동자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조건 등을 보장할 것과 △부당해고 규제를 통한 고용안정 보장, 노동조합 결성 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